



NSW 경찰 범죄 신고 안내 자료

NSW 정부는 아동 성 학대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은 Royal Commission's Criminal Justice Report (왕립위원회 형사사법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8년에 변경 사항을 적용한 형법(아동 성 학대)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18년 6월에 NSW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¹.

Chancery와 사목구, 성직자가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Failure to report offence)

Crimes Act 1900 (NSW) (NSW 주 형법)에 따라 NSW 주의 모든 성인은 아동(18세 미만)이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믿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를 받은 경우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이유란,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고 범죄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우려 행동 신고 제도(Reportable Conduct Scheme)에 의거 Child Protection Helpline(아동보호헬프라인)이나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아동보호국)에 이미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이 우려되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위법 행위는 성직자 및 종교 사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법 여부는 호주의 모든 관할 구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증거법(evidence law)에 근거해 판결합니다.

EVIDENCE ACT 1995-SECT 127. (1) (증거법-섹션 127. (1))교회 또는 종교 교파의 성직자이거나 성직자였던 사람은 성직자일 때 종교적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종교적 고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 위반(Failure to protect offence)

Crimes Act 1900 (NSW) (NSW 주 형법)에 의하면, 범죄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교구 및 사목구 포함)에서 일하는 성인이, 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성인이 아동을 학대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연에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본 위법 행위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다음 문서는 교구 인트라넷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 NSW 경찰 범죄 신고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 Justice(NSW 지역사회 및 사법부) 웹사이트 dcj.nsw.gov.au 참조.

개정 법안에 대한 문의는 Safeguarding Broken Bay 이메일 safeguarding@bbcatholic.org.au 로 문의해 주세요.

추가 자료

교구 인트라넷(intranet.bbcatholic.org.au) Safeguarding 페이지에서 Parish resource 를 클릭하면 추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¹ NSW Government Fact Sheet: New Legislation to strengthen child sexual abuse laws